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5. 1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4월 26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5월 6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5.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내용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27조 제5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안 제26조 제3호,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4호,제37조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최소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안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헌 영)

○ 본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내용의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7조의2에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한 바 이는 2010. 8. 4일 일부개정된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제1항에서 이자율 4%~6%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임.

○ 안 제27제3항제4호, 제27조제4항제7호,제8호, 제27조제5항을 신설 한바 이는 2011. 1. 13일 일부개정 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4호, 제26조제5항제10호,제11호,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각각 변경한 것으로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한 것임.

○ 안 제30제3항과 제30조제4항을 신설한 바 이는 2009. 5. 28일 및 2010. 4. 11일 일부개정 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3항, 제30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료 감면율을 80%로 하고,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임.

○ 안 제33조제2항과 제33조제3항 제91조제1항을 개정한 바 이는 2010. 8. 4일 일부개정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임.

○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52 호

제출연월일 : 2011.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내용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27조제5항)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안 제26조 제3호,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4호,제37조제2호)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최소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안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1.2.24 ~ 3.16,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다음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26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제27조제4항에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8.「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를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하고,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④ 영 제30조의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납부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3절의 제목 “신탁”을 “신탁 및 교환”으로 하고, 제39조 다음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의 납부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신 설>	제1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2.(생 략)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6.(생 략)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1.~2.(현행과 같음) 3.---------- 지식산업센터로 ---------- 4.~6.(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2.(생 략) 3.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2.(현행과 같음) <삭 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6.(생 략)	1.~6.(현행과 같음)
<신 설>	7.「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 설>	8.「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신 설>	⑤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⑤ (생 략) ⑥ 영등포구가 건립한 **아파트형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지식산업센터를**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바.(생 략)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또는 아파트형공장 내의 공유재산 ②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 ---------- ---------- ---------- ----------. 1.~2.(현행과 같음) 3. ---------- ----------. 가.~바.(현행과 같음)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 지식산업센터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 설>	④ 영 제30조의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 략) ②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3.(생 략) ④ (생 략)	1.~3.(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3.(생략)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영등포구가 조성한 농공 단지, 영등포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④ (생 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3.(현행과 같음) 4. ---------- **지식산업센터**, ---------- ②~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조성원가매각) 영 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생 략)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내의 재산 3.~4.(생 략)	**제37조(조성원가매각)** ----------. 1.(현행과 같음) 2. ---------- **지식산업센터** --------- 3.~4.(현행과 같음)
제5장 일반재산 **제3절 신탁** <신 설>	**제5장 일반재산** **제3절 신탁 및 교환**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의 납부는 제17조의 2를 준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9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4.(생 략) ② (생 략)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삭 제> 2.~4.(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